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스배관시설 이용 제공의 원칙 마련 등〉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397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제공 조건에서 설비능력의 범위 문구 삭제 ...	3
2. 가스배관시설 이용제공의 원칙 마련 등	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5. 7.
3. 회부연월일 : 2025. 5.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986년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처음 도입된 이후 LNG 도입 부문은 약 20년 동안 가스공사의 독점 체제가 이어져 왔음. 이후 1997년 舊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스시장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발전용 및 산업용 대규모 사업자의 자가소비용 도입이 허용되었고 2005년에 이르러 직수입 물량이 처음으로 국내에 수입되었음. 2005년 33만 톤에 불과했던 LNG 직수입 물량은 2024년 1,223만 톤으로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24년 우리나라 전체 LNG 수입량의 26%에 해당함.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 물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천연가스 도매시장과 배관망은 여전히 한국가스공사 독점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배관망의 경우 가스공사가 소유자이자 운영자로서 배관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관한 전권을 보유하고 있어 망 확충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망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활용을 목적으로 한 배관시

설 공동이용을 위하여 가스공사가 배관망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배관시설이용자의 가스 인입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관망 신설 확충 및 압력 보강 등 증설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그 재원은 시설이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이용요금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는 등 배관시설 확충 및 이용에 관한 원칙을 「도시가스사업법」에 명확히 정하고자 함(제39조의7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제공 조건에서 설비능력의 범위 문구 삭제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제공 조건에서 “설비능력의 범위”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제39조의8제1항에-----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이 가스공급시설²⁾을 보유한 자와

1)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①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자와 협의하여 그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가

협의하여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는 “설비능력의 범위에서”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에게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이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스도매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행위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³⁾.

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 또는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 ④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시설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2)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가스제조시설, 가스배관시설, 가스충전시설 등을 말한다.

3)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7(금지행위)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2. (생략)

13.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4.~15. (생략)

이러한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는 국가 기간설비인 가스공급설비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⁴⁾,

개별 사업자 단위에서 투자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배관망과 같은 가스공급시설의 경우 자연독점의 성격이 강해 한국가스공사의 독점적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배관망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공동이용을 강제하고 있음⁵⁾.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가스배관시설 이용계약 체결 시 자체 배관망 분석을 토대로 계약 가능량을 산출하여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한편, 자가소비용 직수입 비중은 2015년 기준 국가 전체 도입물량의 5.7%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기준 22.3%를 차지하였으며 2024년에는 25.8%까지 확대되었음.

4) 동 제도 도입(2007.12.21.개정) 전에는 사업자간의 개별적인 협상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의 이용 조건 등을 정하는 제한적인 방식의 공동이용제도가 운영되었으나, 협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어 국가기간설비의 효율적인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

5)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시장 거버넌스 선진화 방안 연구, 2024.9., p.26

[천연가스 자가소비용 직수입 현황]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직수입 물량(만톤)	188	216	465	614	728	914	860	738	927	1,211
비중(%)	5.7	6.3	12.3	13.9	17.8	22.3	18.4	15.7	20.6	25.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런데 자가소비용 직수입 증가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 규모를 규정하는 “설비능력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배관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이 원활하지 못하고 시설 이용자와 운영자간의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제공 조건에서 “설비능력의 범위”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시설 이용자를 위한 가스배관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찬반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민간LNG산업협회는 “설비능력의 범위” 문구는 배관망 운영자이자 이용자인 한국가스공사가 경쟁관계에 있는 시설 이용자를 위한 가스

배관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가스배관시설 이용의 제공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설비능력의 범위” 문구를 삭제하여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 이용 제공 의무만 남게 될 경우 가스배관시설의 과잉투자로 인한 가스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계통운영상 기존 가스배관설비가 미활용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가스공급설비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공동이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2. 가스배관시설 이용 제공의 원칙 마련 등

개정안은 ① 가스배관시설 이용자가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가스배관 설비 운영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가스도매사업자가 가스배관 설비 능력을 갖추고 증설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며, ③ 가스도매사업자가 가스배관시설 이용요금을 배관시설의 확충·유지·보수사업에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설비능력 구비 및 증설 계획 수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7 및 제51조).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의7(<u>금지행위</u>) ① (생략)	제39조의7(<u>배관시설 이용 제공의 원칙</u>)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스배관시설 시설이용자는 배관시설 이용을 위하여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는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1. <u>주간 인입계획량</u> 2. <u>정압 압력</u> 3. <u>배관 정비 계획</u> 4. <u>배관망 재고</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또는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2. (생략)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③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배관능력의 이유로 시설이 용자의 인입 제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비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증설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u> <u>④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8에 따라 수납한 시설이용요금을 배관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u> <u>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이행에 관하여 점검하고 가스도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u> 제51조(벌칙) ----- ----- ----- -----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13.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39조의7제5항에----- -----
14. · 15. (생략)	14. · 15. (현행과 같음)

가.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정보 요청 근거 마련

현행법⁶⁾은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가 배관시설이용요금 및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배관시설이용규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이용서비스	주배관망 가스이송(인입지점→인출지점) 서비스
이용요금	(용량요금) 시설이용자가 이용하기로 약정한 계약용량(시간당 최대유량)에 따라 지불하며 인입/인출용량요금으로 구분 (종량요금) 시설이용자가 이용한 가스량에 따라 지불
계약기간	1년 이상 연간 단위로 체결(1년 미만 월단위 체결도 가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6)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적정하지 못하게 되어 공공의 이익증진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배관시설이용규정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⑤ (생략)

배관시설이용규정 제41조7)는 가스도매사업자가 시설이용자에게 배관시설이용요금 단가 및 산정내역, 주요 배관시설 정보(인입가스총량, 인출가스총량 및 주요지점 압력현황)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시설이용자는 가스도매사업자에게 배관시설이용물량 계획 및 시간당 계량량, 연결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현황, 배관시설이용 가스의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가스공사가 배관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배관시설 운영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정한 배관시설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배관시설과 관련된 정보 관리를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스배관시설 시설이용자가 배관시설 이용을 위하여

7) 「배관시설이용규정」

제41조(시설운영 정보의 제공)

① 공사는 시설이용자에게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한다.

1. 배관시설이용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배관시설이용요금 단가 및 산정내역
3. **공사의 주요 배관시설 정보(인입가스총량, 인출가스총량 및 주요지점 압력현황)**
4. 연결시설 설치 관련 공사 기준
5. 공사 시설이용 관련 천연가스 품질기준
6. 시설이용자별 계약용량, 계량/할당, 교환, 관내재고 및 물량과부족정산량 등 배관시설 이용에 중요한 사항(단, 개별 시설이용자가 사전에 공개여부를 동의한 항목에 한함)

② 시설이용자는 배관시설 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배관시설이용물량 계획 및 시간당 계량량(인입/인출계량지점이 전용배관시설에 설치된 경우)
2. 연결시설의 유지, 보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사항
3. 배관시설이용 가스의 품질에 관한 사항
4. 기타 배관시설 이용에 중요한 사항

③ 정보교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설이용자와 공사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시설이용자의 계량 또는 할당관련 정보, 물량과부족 잔량, 인입 및 인출지점 계약용량 관련 정보는 공사에서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이용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가스도매사업자에게 주간 인입계획량, 정압 압력, 배관 정비 계획, 배관망 재고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가스도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설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배관망 운영의 신뢰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LNG산업협회는 배관망 정보 공개를 통해 배관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 시설이용자의 망 접근성 개선 및 시설 운영자의 계통운영 신뢰성 확보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개정안에서 제공하도록 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고, 한국가스공사와 배관시설 이용자 간 개별 계약정보를 타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공정한 경쟁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가스도매사업자의 설비능력 구비 의무 및 증설 계획 수립 의무

배관시설이용규정 제36조⁸⁾는 배관시설 이용 제한 및 중단에 관하여

8) 「배관시설이용규정」
제36조(배관시설이용 제한)

규정하고 있음. 한국가스공사는 ① 인입가스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② 시설이용자의 인입량이 급격하게 변동되어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한국가스공사의 계통 및 시설의 장애로 시설이용자의 인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시설이용자의 인입물량과 관계되는 권역의 수요가 불균형으로 인하여 인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자에게 배관시설 이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이용자에게 배관시설이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인입 제한

가. 인입가스의 품질이 제15조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시설이용자의 인입량이 급격하게 변동되어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공사의 계통 및 시설의 장애로 시설이용자의 인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시설이용자의 인입물량과 관계되는 권역의 수요가 불균형으로 인하여 인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인출 제한

가. 공사 주배관의 계통사고로써 가스누출 또는 소비처 사고 등의 영향으로 감압운영, 구간차단, 구간 내 가스방출이 불가피한 경우

나. 인출지점의 시설이용자 시설 등의 장애로 공급이 불가한 경우

다. 시설이용자의 인출량이 급격하게 변동되어 계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제27조 제2항 제1호의 봉인이 공사와 해당 시설이용자 간 사전협의 없이 파손 또는 제거된 경우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자의 배관시설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시설이용제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이용자가 따르지 않을 경우

2. 거래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이용자 계량설비의 고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인입 및 인출계량지점의 주계량설비 고장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나. 인입 또는 인출계량지점의 주계량설비와 보조계량설비 모두 고장난 경우(단, 인출의 경우 정산방법을 정하기 위한 일정한 협의기간 동안에는 공급을 중단하지 않는다)

다. 인입 계량지점의 가스분석기 고장이 5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배관시설의 수리 등 공사(工事)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5. 법령에 따라 시설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6. 가스 누출 등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배관공사 등 배관시설이용을 중단하여야 하는 운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 ⑥ (생략)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가 배관능력의 이유로 시설이용자의 인입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설비능력을 갖추고 증설 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설이용자의 인입 제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민간LNG산업협회는 가스도매사업자의 설비 증설 의무가 강화될 경우 배관망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어 민간 LNG터미널의 송출 제약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특정 이용자의 인입을 위한 배관설치를 강제할 경우 이용자의 수익만 증대되고 해당 투자비는 일반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배관시설이용요금의 사용용도 제한

배관시설이용요금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적정원가 및 적정투자보수 등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으로 결정됨. 현행은 배관시설이용요금 수익의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가스도매사업자의 도매공급비용 산정 시 총괄원가에서

배관시설이용 수익을 차감하여 소비자요금의 인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수납한 배관시설이용요금을 배관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사용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으로, 시설이용자의 배관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배관시설이용 수익의 사용을 특정용도로 제한할 경우 소비자요금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은 “제39조의8에 따라 수납한 시설이용요금”을 배관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39조의8⁹⁾은 배관시설이용요금 외에도 제조시설이용요금을 규정하고 있어 제조시설이용요금의 사용용도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9)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 등)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략)

④ 가스제조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제조시설이용요령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생략)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개정안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년 가스도매사업자의 설비능력 구비 및 증설 계획 수립의 이행에 관하여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가스도매사업자가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 배관시설 관련 정보 제공 및 배관시설 이용요금의 사용용도 제한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배관시설 운영자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배관시설 정보 제공 및 배관시설 설치의무 등의 이행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개정안에 동의하나, 안 제39조의7제4항의 배관시설이용요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동의가 곤란하여 해당 규정 위반 시 행위중지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제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64